

제43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16일(수)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1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11.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3)
1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1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16.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2)
17.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18.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2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상정된 안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3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3
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3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3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3
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3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4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4
1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4
11.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4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3) 4
1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4
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4
1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4
16.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2) 4
17.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4

18.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4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	4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4
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4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4
2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4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4

(11시35분 개의)

○소위원장 김의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 15일자로 우리 소위원회의 김동아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남희 위원님께서 다시 보임되었습니다.

지난 9월 14일 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개정안 등 24건의 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면서 기관 측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님과 각 법률안의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정리한 후 마지막에 일괄하여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1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11.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3)
1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1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16.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2)
17.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18.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2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11시37분)

○소위원장 김의겸 의사일정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두희 국방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 간 합의 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제기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명으로 말씀드리면 검사징계법 개정안입니다. 4번입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지난 회의의 논의 경과와 쟁점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지난 소위에서 거의 많은 부분 논의를 하셨고 지금 해결이 안

된 쟁점 사항 몇 개 남아서 그것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별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검사징계법이고요. 소위 자료 3페이지입니다.

소위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검사징계법 조문대비표가 있는데요.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넣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면이 들어간 것은 공소청법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위원 임기 부분은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일괄적으로 다 하고 그다음에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소위원장 김의겸 다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과 나눴던……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그러면 검사징계법 쟁점 사항은 읽었고요.

폭력행위처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7페이지입니다.

소위 자료 7페이지, 현행 제10조를 보면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조항이 있는데요. 지방청 검사장이 이 법에 따른 특수폭행이나 집단구성·활동죄 등에 대해서 사경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이런 등의 사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뉘어서 현행을 그대로 두자는 의견,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수정 의결하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다음 법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사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3페이지입니다.

법무사법의 경우에는 법무사의 업무 제2조 1호·2호에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해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이 업무 범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소청으로만 법문을 정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사협회는 중수청에 대해서도 기관명을 넣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변협은 직역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15페이지에 보시면 법무사법에 보면 기존의 법원이나 검찰 직원에 대해서 시험 면제 특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 직원이 중수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공수처로도 올 수 있으니 공수처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이 특례를 인정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아 저희가 조문을 3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넣어 두는 게 지금의 개편 절차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넣어둠과 똑같은 맥락으로 집행관법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넣어 두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소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소청법 부칙 개정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의견을 내 왔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직원 보직권이 지금 제정된 공소청법에 없는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 넣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나머지 것은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형소법도 다 말씀을……

○소위원장 김의겸 예, 다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그러면 형사소송법 등 13개의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관련해서 소위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수사 관할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만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경과 4급 이상 수사관으로 확대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형소법 조항을 인용하면서 형소법 245조의13 조문까지 적용하도록 넣었는데요. 이것은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피해자 면담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공수처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10일이 지나면 공소청검사한테 피의자를 인치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 달라는 공수처 의견이 있었고요. 지난 소위 때 광규택 위원님께서 구속기간 연장 조문에 대해서 별도 조문으로 하기보다는 여기 3항으로 넣자고 말씀하셔서 조문 이동을 해서 3항으로 넣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완수사요구와 관련해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추어서 공소청검사는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도록 저희가 조문 정리를 해 뒀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대등한 관계로 조문을 다시 정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공소청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공수처장님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조문도 넣어 달라는 공수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총 5개 정도 쟁점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 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설특검법입니다.

소위자료 35페이지입니다.

1개의 쟁점이 있는데요. 파견검사의 권한에 지금과 같이 수사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공수청법 및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맞추어서 파견검사는 더 이상 수사권이 없고 공소유지권만 있는 것으로 조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견검사한테 이 법에 따라 특별히 수사권을 부여할지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사법원법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군사법원법에 보시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신설된 조문이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최대 7년까지 유예기

간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조문 정리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최대 3년까지만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7년으로 하실지 최대 3년으로 하실지 이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군사법원에 따른 재정신청이 지금은 현행 민간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같이 지방법원 합의부로 재정신청 관할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률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기존의 검사가 행사하던 통신제한조치라든가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권은 삭제하고 대신 수사처검사라든가 특별검사라든가 군검사의 그런 권한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검사는 형집행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권만 두었는데 이에 대해서 부칙 조항에다가, 지금 공소청검사도 앞으로 3개월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가 필요하고 선관위 특검법 같은 경우도 계속 경과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경과조치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처벌법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금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해자에 대해서 영상녹화를 하고 그 영상녹화물에 대해서 증거능력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전히 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증거능력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증거능력을 인정하실지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이 회의 직전에 저와 박형수 간사님께서 논의를 했는데, 우선 제가 합의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하나씩 하면서 협의된 내용을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김의겸 아, 그렇게요?

○박형수 위원 하나씩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 얘기를 하고 의견 듣고 이렇게 가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김한규 위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김남희 위원 합의된 것을 먼저 얘기하고……

○박형수 위원 쭉르륵 다?

○소위원장 김의겸 예, 합의된 내용을……

○김남희 위원 합의된 걸 얘기하고 합의되지 않은 것만 논의하시면 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박형수 위원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의겸 예, 합의된 내용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 이 부분은 요구권이 수사지휘권하고 무관하다, 그래서 지검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용어 정비하는 수준에서 유지한다, 김승원 의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법무사법 개정안도 검찰청을 공소청, 물론 여기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선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또 공소청법 개정안도 원래 검찰청법 50조에 있던 것을 삭제했으나 다시 살려서 법무부장관이 직원에 대한 보직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법안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군사법원법도 개정안의 취지대로 최대 3년 유예를 하고 그리고 재정신청 관할법원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도 경과조치니까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런 정도 합의를 보았고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은 검사징계법 그리고 공수처법안 그리고 상설특검법, 성폭력범죄 처벌법입니다.

지금 합의를 본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합의된 상태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법무사법 하나만 좀 질의 짧게 해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무사법 2조 1항 1호·2호에 중수청을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중수청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글썄요, 저희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능하다라는 내부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기존 판례에 의하면 또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전문위원도 혹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능한 걸로?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대법원 판례의 맥락상 연관된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저도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사실 위원님들보다 먼저 기관 쪽 의견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국방부차관님 의견이 있으신가 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법원법 관련해서 전자화하는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서 물리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사업을 하는 절차를 고려했을 때 3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두 번째, 재정신청 관련해서 군사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큰 차이를 현재 보이고 있고 또 이게 촉박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방안은……

○소위원장 김의겸 한 번만 다시, 그 뒷부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국방부차관 이두희 군사법원 관련해서 저희 군사법원과 법원행정처 입장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촉박하게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그런데 이게 정비가 안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합의하신 대로 가지지요, 양당 간사가 합의하셨는데.

○소위원장 김의겸 박형수 간사님, 차관님이 3년은 예산 확보랑 너무 촉박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7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김한규 위원 아니, 합의 3년으로 하고 추후에 만약에 도저히 예산 부족이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못 하면 그때 가서 다시 1년, 2년씩 연장하더라도……

○소위원장 김의겸 차관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그러면 제가 아까 합의됐다고 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소위원장 김의겸 그러면 합의된 내용들은 합의된 내용대로 나중에 제가 의결을 하도록 하고요. 아직 쟁점들이 남아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검사징계법.

곽 위원님.

○곽규택 위원 차관님, 지금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이 보니까 법무부차관에 검사 2명, 변협추천회 변호사 1명 그다음에 법학교수회 등에서 추천하는 교수 2명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변호사 자격 없는 합격자 2명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총 8명이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이번 형소법 개정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징계위원들의 임기를 단축하겠다 이 건데 법무부차관하고 검사 2인은 어차피 새롭게 바뀌는, 이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말이에요. 나머지 5명은 대한변협 그다음에 법학교수회 이런 데서 기존에 추천해 가지고 지금 징계위원으로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본인 임기도 3년으로 돼 있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관보다는 임기를 길게 해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것을 바꾸겠다, 그래서 임기를 단축시켜 가지고 1년 단위로 하겠다 하는 것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그 장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건드릴 필

요가 없는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 조항이 보니까 3년 임기로 한 조항이 2020년 10월 달에 개정이 된 조항이던데 그 전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었지요? 혹시 아시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자료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래요? 징계위원회 구성이 바뀐 건지 임기가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 2020년에 개정된 거면 불과 한 6년 전에 개정된 건데 이것을 새롭게 바꿀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징계위원회 구성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소위원장 김의겸** 예, 말씀해 주세요.

○**박균택 위원** 곽규택 위원님 말씀 참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기는 합니다마는 인사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돼 있고 또 적격 심사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심사위원만 3년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균형에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의 인사 보직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고 면직 여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적격 심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그 역할들도 1년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여기와의 균형 문제를 좀 생각한다면 1년이 맞다고 볼 견해가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꼭 굳이 반대를 하셔야겠는지 그 점을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이게 쟁점이 두 개인데 파면을 넣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공소청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형사소송법 개정과 기존 법률에 대한 거기하고 일치시키는 취지이기 때문에 파면을 추가하는 부분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임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은 법안 처리 목적은 형소법 개정의 후속 법안 처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쟁점에 이견이 있다면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고 이번에는 파면만 넣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쪽 다 양보를 좀 해 주셔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김의겸** 예. 이견 지금 다른 관련된 임기가 다들 1년으로 돼 있어서, 공소청법이나 또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1년으로 돼 있어서 3년과 1년 안으로 이견이 있다.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지요.

○**박형수 위원** 넘어가는 건 좋은데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다, 징계위원회 임기를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게 무슨 필연적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사위원회와 다르게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길게 해 놓은 이유가 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사보다는 징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규정이 임기를 달리 규정해 놓은 것 아닌가, 그 취지를 살린다면 저는 이번 개정에 이것까지 넣는 것은 사실상 형소법 개정안 부칙에 원래 있던 그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후속 법안을 정비한다는 그런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하여튼 일단 검사징계법은 이렇게 서로 이견이 있는 걸 확인하고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공수처법안은 제일 나중에 하고 상설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쟁점은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개정안 내용은 공소유지권 행사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관 차원에서는 없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 소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형소법 개정 이후에 상설특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곽규택 위원 자료 중에 3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 관련해서 김동아 의원안에 의할 경우에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만 명시하고 수사권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파견검사의 수사권은 그냥 없애는 걸로 하는 건데 이게 그 밑에 검토의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예 수사권 규정이 삭제가 되는데 파견검사의 경우에 공소유지만 하라, 그런데 파견을 받아서 같이 팀을 구성 해 놓고 있자 이견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럴 거면 파견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파견검사 받지 말고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공소유지는 기존 검찰에서 하세요. 그게 사실은 더 수사과 기소의 분리에 맞는 거지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제도를 계속해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그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유지까지도 다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로 간다면 파견해서 그 팀을 구성하고 있는 검사에게도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요, 사실.

그러려면 전문위원실 의견처럼 어떻게든 수사권의 전제를 규정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이 다 삭제가 된 상황이니까 사법경찰관의 수사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 말이,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다른 위원님들.

○김한규 위원 저희는 또 이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비슷하게 드려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곽규택 위원님 의견에 좀 이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향후 상설특검을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향후 바뀌는 검사는 검사 역할대로, 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대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상설특검에서 봐서 운영하는 게 맞고 일단 그렇게 법 체계는 바뀌야 되고.

만약에 사안에 따라서 특별히 파견받은 검사한테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상설특검이 아니라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서 합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선관위 특검법은 저희가 법안 처리할 때 여야 합의로 이미 형소법 개정 전에 상설특검이 시작됐기 때문에 혼선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예외를 한 거니까 이 상설특검법은 형소법 개정 취지에 맞게 검사한테 수사 권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이렇게 양쪽 이견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우선 기관 쪽 의견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배제되었고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영상녹화물이라고 하는 전문증거에 예외적 증거능력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

○**박형수 위원** 저는 이 조항을, 검사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원래 특례를 인정한 조항입니다. 어떤 특례냐? 증거능력에서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증거능력의 요건을 완화해 주는 특례를 인정한 거거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호를 검사가 면담과 지금 사실 확인만 할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경우에만 특별히 검사에게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걸 입법적인 결단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형사소송법이, 검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바뀌어야 된다고 필연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것은 사실확인만 면담만 검사에게 가능하지만 특별히 여기에는 검사도 허용을 해 주자, 충분히 입법적으로 논의 가능하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이 법 또한 개정안의 취지에 비춰 보면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춰서, 검사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에 맞춰서 만들어진 법률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지금 공수처법안인데요.

일단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도 막 들어오기 전에 박형수 간사님하고 합의를 본 부분과 또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수처 수사대상을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고요.

두 번째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박은정 위원님의 안대로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박은정 위원** 아니요, 보완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추가수사 의뢰 및 협조의무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완수사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수사요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김한규 위원** 일단은 합의하신 내용을 말씀은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실 건지.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대로 하셨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한규 위원** 그러면 그 표현은 빼고……

○**소위원장 김의겸** 예. 그러면 하여튼 제가 박은정 위원님의 의견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박형수 간사님하고 저하고 합의한 내용은 보완수사 요청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피해자 면담제도 적용도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어려운 걸로, 도입하지 않는 걸로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사처 검사의 구속기간 및 피의자 신병처리 관련해서는 법무부 의견대로 형사소송법 제203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맞지요, 간사님?

○박형수 위원 예.

○소위원장 김의겸 이래서 딱 남아 있는 건 이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 문 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것을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소위원장 김의겸 예, 말씀하세요.

○박은정 위원 일단 지난번에 논의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면 공소유지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또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사처 검사에게 추가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혹은 추가수사를 요청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기표 의원안의 3항에 보시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형소법을 규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준용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형사소송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검경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 템 KICS에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전에 종합수사 결과,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그전에 서로 의견을 제시 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신속성과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요.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하는 수사의 특수성, 공수처 사건의 특수성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일반 형사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들, 주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절차와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KICS에 사건번호 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준용이 되어서도 안 되고 추가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 에 있는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괜찮은데 이 수사요청의 절차와 내용은 형소법을 준용해서는 안 되고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이 절차와 내 용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르게 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완수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추가수사,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공소청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처 검사에게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그것이 서로 간의 협조, 협력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돼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견 잠깐……

○소위원장 김의겸 곽 위원님.

○곽규택 위원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이 처음 생길

때 사실 위헌성 시비가 되게 많았지요.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수사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 이게 과연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맞느냐, 이것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 위헌시비가 조금 없어진 게 같은 형사소송법 절차가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형소법에 있는 규정을 적용을 자꾸 배제하는 특별한 기관으로 만들수록 이것은 위헌성이 강해지는 기관 이에요.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형사소송법의 검사라는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는데 과거에 있던 검사 개념을 따고 있는 게 지금 이 공수처에 있는 검사예요. 사실은 공수처에서 검사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냥 공수처 수사관이고 공수처 기소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은정 위원 헌법에 있잖아요.

○곽규택 위원 검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기존의 검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지금 혼동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굳이 이원화를 시켜 가지고 여기서는 보완수사 요구, 여기서는 추가수사 의뢰 이런 식으로 저는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냥 통일적으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도 사실 학문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법률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용어예요, 보완수사 요구, 보완수사권 이런 말들이. 그러면 여기에 무슨 가치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법률용어 아닌 것을 지금 법률에 처음 도입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공수처에서는 무슨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이게 상하기관 간의 무슨 그런 요구와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대등기관이라면서요. 대등기관에다가 두고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공수처, 검찰하고 대등기관하세요. 하는데, 그러면 용어도 같이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 요구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왜 굳이 형소법에 없는 또 다른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특별기관화시키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지금 이번 기회에 무언가 공수처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수처장님, 사무처장님, 차장님, 검사들 다 임기제분들 아닙니까? 공수처하고 같이 평생을 같이 할 분들 아니잖아요. 자꾸 기관을, 조직을 그런 식으로 자꾸만 위상을 새롭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명칭도 형소법에 있는 용어 그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형사사법체계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정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박형수 위원 아니, 다른 사람도 얘기 좀 하게…… 뭐 혼자서만 계속 얘기해요?

○소위원장 김의겸 우선 김남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김남희 위원 저는 아까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30조의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에 대해서 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을 영상녹화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박탈하는 조문을 수정의견으로 넣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조문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 피해자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

문이 들어간 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방식의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형사 피해자들이 그러면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나서 만약에 증거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수사과정에서 아무 의미 없게 돼 버리는 건데 그러면 이 조문을 아예 검사를 못 하게 하든지 검사에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증거능력을 빼 버리는 이런 방식의 조문은 설계가 과연 합리적인지 저는 너무 의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 진술 내용 영상녹화 보존 부분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박탈하는 내용을 꼭 넣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의미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건데 이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있는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위해서 있는 그런 조문에조차 증거능력을 굳이 굳이 박탈한 이런 조문을 넣어서 그러면 피해자들을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게 하는 거지요.

피해자들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다음에 녹화를 다 해 놔는데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 또 어디 가 가지고 또 진술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이 법의 취지와 이 조문의 취지에 맞는지 저는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박형수 위원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

○박은정 위원 김남희 위원님, 지금 그게 성폭법 몇 조……

○김남희 위원 30조요.

○박은정 위원 30조……

○김한규 위원 112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박은정 위원 제가 자료가 지금……

○김한규 위원 의사일정 12~24항 자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성폭력처벌법은 소위자료 112페이지입니다.

○박은정 위원 의사일정 몇 항…… 지금 저한테 이게 짧은 자료밖에 없어서…… 의사일정 1~2항이 지금 성폭법……

○소위원장 김의겸 19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아, 의사일정 기준으로요?

○박은정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의사일정은 19항입니다.

○박은정 위원 19요? 몇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112페이지입니다.

○박은정 위원 112페이지요?

그러면 성폭법에 저희가 영상녹화한 경우에 증거능력 배제하는 것 때문에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남희 위원 예.

○박은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예외규정을, 형소법에 달리 예외규정을 두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남희 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이 조문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박은정 위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19세 미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희 위원** 예.

○**박은정 위원** 19세 미만에 대해서 영상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영상녹화를 하는 이유가 애네들이 진술에 되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특별하게 검사들이든 사법경찰관이든 진술에 대해서 확실히 녹화를 하고 그것을 필요한 경우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있는 조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검사의 경우에도 사실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부정해 버리면 이 조문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지요.

○**박은정 위원** 이중·삼중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저희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던 원칙을 해 냈기 때문에……

○**김남희 위원** 그런데 그 원칙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성폭행……

○**김남희 위원** 국민들의 고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식의 방식의 조문은 맞지 않지요.

○**박은정 위원**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성폭력 피해자, 특히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검사의……

이게 영상녹화이기 때문에 영상녹화에 대해서는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없을 수 있어 가지고 이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에서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 증거를 규정하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검사실에서 하는 영상녹화에 대해서 특별히 좀 지금 통과된 형소법하고 다르게 특별규정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취지에 공감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를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를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 공수처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인데 위헌 여부 운운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공소청 검사하고의 수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검경의 기본 형사소송법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용어 자체를 보완수사라기보다는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것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검찰을,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겠지요. 특히 공소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독립된 조직인데 공소청 검사에게 약간 종속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에 응해야 되고 그것도 공소청 검사가 결정하는 대로 ‘이것 보완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것이 보완이 되는 이걸 아니거든요. 법률가인 검사, 그러니까 공소청 검사와 수사처 검사가 대등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공수처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그러면 제가 정리를……

○박형수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위원장 김의겸 잠깐만요. 그러면요……

○박형수 위원 그건 아주 간단하게, 아까 다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률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입법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김남희 위원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률체계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꿨잖아요. 원래 공수처의 출범 이유는 검찰을 견제하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견제를 했느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견제를 했던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공소유지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깐 그래서 견제를 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기능을 지금 분리했잖아요. 분리해서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공소청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기능에 따라서 달리 봐야 돼요.

경찰과 검찰도 이제는 공소청과 대등 관계입니다. 거기서 보완수사 요구는 뭐냐, 기소를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기소를 하기에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도 공수처 일부 사건에서는 바로 기소할 수 있지요. 그것 제외한 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유지를 해야 돼요. 검찰이 아니지요. 이제는 공소청이지요. 그러면 공소청 입장에서 봤을 때 기소를 하거나 공소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구나, 이걸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경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용어도 보완수사 요구라고 같이 써야 돼요. 어디는 보완수사 요청이라고 그러고 추가수사 의뢰라고 하고 어디는 보완수사 요구라고 쓰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형사소송법 책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달리 설명할 거예요, 기능은 동일한데? 그래서 동일한 용어를 써 줘야지 국민들께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용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면 ‘요청’ 정도로 하고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 이 정도는 제가 우리 간사님 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양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공소청이 무슨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에 용어도 달리해야 되고 뭐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형사소송법 체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일단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김용민 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원칙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련된 법의 정합성을 맞

추기 위한 개정 논의를 하는데 그 원칙을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관점의 개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증거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수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검찰에 수사인력을 다시 뒀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에 대한……

○**김남희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수사예요?

○**김용민 위원** 좀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님은 다른 사람 토론할 때 끼어들지 마시고, 원래 저희 토론은 위원 상호 간 토론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의겸** 예.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사회를 좀 잘 봐 주십시오. 이것은 부적절한 방식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끼어드는 게 부적절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잘 봐 주십시오.

어쨌든 간 수사인력과 예산 문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것이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의겸**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저희가 원래 논의했던 취지대로 가는 것이 맞고요.

위원님들 좀 끼어들지 마세요. 왜 이렇게 방해합니까?

○**김태규 위원** 나 당신한테 끼어드는 것 아니에요. 당신한테 끼어드는 것 아닙니다.

○**박규택 위원** 저기 두 분끼리 또 언쟁이 되어 가지고……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토론하면 좀 그렇게 하지 마시지요.

○**김태규 위원** 여기다 말을 하세요, 여기서 시비를 거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김용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의겸** 예, 알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사인력과 예산이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원칙을 지키다가 피해를 발생하는 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이것 통과되면 피해자단체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박은정 위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 마무리 좀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의겸**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좀 들어 보자고 한 취지는 김남희 위원님의 고뇌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동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외로 둘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이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님이 지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검사가 면담하고 영상녹화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자고 하는 취지는 제가 동감을 하는데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그것이 왜곡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만이 영상녹화를 해야 수사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그 사건의 완결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는 이게 보완수사 요구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외

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했고 형사소송법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수사 요구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원칙을 우선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검사만이 영상녹화를 해야 된다는, 검사만이 피해자 영상녹화를 해야만, 경찰은 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은 어떤 사례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런 걸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남희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된 사안은 제가 지난주에 형사피해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온 안산주점 성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받았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CCTV도 강제적으로 확보를 안 했고 그런 상황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져서 피해자가 상처만 남은 채 자살을 해 가지고 이슈가 됐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게 검찰로 넘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 성폭력 피해자들께서 호소하는 것이 경찰의 경우에, 물론 대부분의 경찰들은 수사를 잘 하겠지만 이 경우에 경찰이 지역유지랑 유착되어 있거나 그런 유사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성범죄 중에 지역유지와 유착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럴 경우에는 검사의 사실확인만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 그것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그런 경우에 이 사실확인을 할 때 지역유지와 유착되어 있는 경찰에게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 놓고는 여기서 ‘너는 증거능력 없어’라고 말을 해 버리면 이것을 이 사람들이 믿을 수도 없는 다른 수사기관에 가서 또 진술을 하고 그걸 반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범죄의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성폭력범죄에서는 전건송치가 도입이 됐는데 전건송치를 도입해 놓고도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피해자들은 두 번 우물을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몰각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토론 안 한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의겸** 말씀하세요.

○**곽규택 위원** 원래 증거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법 교과서에 왜 증거능력이라는 게 중요하나,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거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하고도 무관하고요 그 증거를 만든 사람이 경찰이나 검사나하고도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증거능력의 특칙을 뒀다는 것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도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항인 겁니다. 그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요 진술을 한,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단계에서 어떤 영상녹화물을 남겨 놓은 그 피해자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못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검사 단계에서 쓴, 면

답을 했던 그 영상녹화물에 남겨 놓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검사 단계에서 했으니까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증거능력 제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고 증거능력이라는 제도 자체의 특칙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개별법에 증거능력에 관한 특칙을 정말 필요하면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지 이게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되고 검사는 수사할 수 없으니까 검사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모든 대화는 증거능력 특칙이 적용될 수 없어, 이걸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수한 사건,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아동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증거능력의 특칙을 배제하는 규정들을 따로 뒀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은정 위원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 답을 좀 해도 될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박은정 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마 안산 사건 예를 드셔 가지고,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지역경찰과의 유착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그 불만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 면담 제도가 들어갔고 또 이의제기건도 들어갔고 시정조치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검사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해당 경찰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사가 캐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상급관서라든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성폭범 사건에서만 특별히 이 규정을 두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좀 흔들릴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남희 위원 저는 믿을 수 없는 경찰 때문에 이 조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경찰한테 가서 또다시 진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 위원 똑같은 경찰서 아니고 상급관서나 다른 수사관서……

○소위원장 김의겸 여기까지.

○김남희 위원 저는 어쨌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임기를 놓고 3년을 할지 1년을 할지 이견이 있는, 두 가지 안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 합의한 내용은 저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 이 합의안, 나머지는 다 합의한 내용이고요. 그 안과 박은정 위원님의 안,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 있는 겁니다.

○박은정 위원 준용 규정 부분은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김의겸 아, 준용 규정.

○박은정 위원 준용 규정은 없애야 되고 대통령령으로 다시……

○소위원장 김의겸 예, 그것 포함해서……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이게 보완수사요구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1개월 내에 강제하는 조항 그리고 1개월 내에 수사가 끝나면 사전에 공소청 검사하고 협의해서 사건을 정리하는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 간사님이 협의하신 대로 대등한 요청 관계로 하면 지금 3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두 기관이 협의해서……

○박형수 위원 아니, 협의해도 안돼. 그렇게 하면 하세월이예요.

○박은정 위원 아니요, 이게 1개월 내에……

○곽규택 위원 준용 규정은 그대로 두어야지요.

○소위원장 김의겸 준용 규정은 두는 걸로 합의하되……

○박형수 위원 준용 규정은 그대로 두어야지. 그거는 그렇게 합의한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걸로.

○박은정 위원 아니요, 저는 반대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반대하세요. 반대하면 되는 거고.

○박은정 위원 왜냐하면 공수처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1개월 내에, 이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하고 달라요.

○박형수 위원 일반 형사사건도 1개월 내에 안 되는 게 천지예요.

○박은정 위원 1개월 내에 수사가 끝나지 않고……

○곽규택 위원 자꾸 특수하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니까요. 특수한 게 아니예요.

○박은정 위원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이걸 준용해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서로 간의 협조 절차를 다시 마련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준용 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아직 안 나눴거든요.

○박형수 위원 그거는 전제돼 있는 거예요. 경찰과 동일하게……

○김용민 위원 박은정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요청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리해주는 게 맞지요.

○곽규택 위원 그러면 사건이 정말 끝이 안 납니다.

○박은정 위원 아니, 이건 일반 형사사건하고 달라요.

○김용민 위원 아니, 공수처도 지금 기소를 위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는 하지요. 그리고 끝이 안 나게 하지 않을 거고 현실적으로는 서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할 거예요, 기소해 달라고 보낸 건데.

○박형수 위원 현실적으로는 그게 계속 평풍된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곽규택 위원 아니,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서로 자존심 때문에?

○박은정 위원 그게 일반 형사사건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1개월로 넣은 건데요. 공수처 사건은 다릅니다.

○김한규 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보완수사요구로 그냥 하고 준용 규정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편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공수처 자체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과 기소할 수 없는 사건으로 구분을 했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보완수사요구를 해야지 이게 지금 형소법 개정이 상당히 큰 작업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부수 법안을 140개나 처리하는데 이거를 여기서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 대신에 또 요청이라는 걸 두면 처음에도 여기저기 기관에, 여기는 좀 바뀌야 되지 않나라는 논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수처의 기분은 충분히 짐작하는데 보완수사요구라는 것 자체가 무슨 기관 간의 상하 관계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들어지는 다른 조항들이 생길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형소법 개정 취지의 보완 입법을 만드는 거니까 좀 보완수사요구, 양당 간사 간에서 합의한 게 원래 박은정 위원님의 의견을 따르려고 했는데 박은정 위원님이 보완수사 요청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보완수사요구로 하고 원안대로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우리도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할 게 없네, 우리는.

○곽규택 위원 우리는 자리를 다 섞어 앉는 걸로 협의를 좀……

○박은정 위원 이렇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대동단결하시네요.

○곽규택 위원 아니, 대동단결 그런…… 대동단결하기 싫어요.

○김한규 위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지요. 어떻게……

○김용민 위원 요청으로 합의하셨으면 요청으로 하는 게 맞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위원장님, 공수처 의견 좀 잠깐 드러도 되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지난번에 이미 다 얘기했는데 뭘 똑같은 얘기를……

○소위원장 김의겸 예, 말씀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그동안의 검찰 간에 의견이 달랐던 사건, 소위 말해서 핑퐁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협의 절차를, 보완수사 내지는 보완수사요구건 요청이건 추가수사 의뢰건 이런 협의 절차를 두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요구라고 해서 그대로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공수처법, 공수처의 체계에서 맞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수사권만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경하고 똑같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사경과 다른 점은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형사소송법에 있는 보완수사요구를 그대로 준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형수 위원 법무부차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보완수사요구 등의 개념이 상하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에서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사건을 공소제기하고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지금 형소법 개정으로 여러 수사기관이 신설되었고 절차도 복잡해졌는데 이 기관의 명칭 때문에 다시 보완수사요구와 요청으로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는 것 자체가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로 해서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에 수사 요청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경

찰에 수사 요청하는 규정을 넣었다고요. 그리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요청 개념은 새로운 범죄가 발견했을 때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박은정 위원** 차관한테 물은 게 아닙니다. 차관한테 물은 게 아니고요……

○**소위원장 김의겸** 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그러니까 보완이라는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의 허락 받고 발언하세요.

○**박은정 위원** 보완이라는 것을 공수처 검사만이 보완해야 된다고 보완한다고 판단, 공소청 검사가 이걸 기소하기 싫어서 보완이 필요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데. 그리고 공수처 검사에게 무한히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의 주체, 보완을 판단하는 주체가 공소청 검사여야 하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같은 검사, 법률가인데 어떤 검사의 보완 판단만이 옳은 것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이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수처 검사가 독립된 검사로서 보완에 대한, 이것은 보완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면 공소청 검사와 대등하게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공소청 검사가 독자적, 무조건 일방적인 보완 판단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권한의 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 똑같은 법률가인데요.

○**소위원장 김의겸** 간사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검사가 기소한 것을 판사님이 ‘무죄’ 하면 무죄인 거예요. 똑같은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소위원장 김의겸** 간사님, 그만하시지요.

이 문제는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애초 개정안, 애초 안을 가지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박은정 의원님께서 제시한 안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고자 저희들이 보완수사요청, 응해야 한다 이렇게 바꿨으나 이게 소통의 착오였는지 박은정 위원님이 애초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시니 원안을 가지고, 원안을 지금 만든 이유는 이번에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차장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불만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논의하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크고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정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공수처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 지금 다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오늘은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은 원안대로 공수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그대로 두는 걸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은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박은정 위원** 표결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의겸** 예, 표결.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수처 법

안하고 김남희 위원님이 제시하신,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개정안 이것도 지금 김남희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해 주셨고.

어떻게, 표결을 원하시나요?

○박형수 위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표결을 원할 거예요.

○김남희 위원 기록에 남겨야 돼요.

○소위원장 김의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이견이 없거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된 법안들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제5항 폭력행위 처벌법 수정 의결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항 사법경찰직무법입니다. 원안 의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10항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소위원장 김의겸 예, 다시 한번…… 한번 의견은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관련해서 3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것을 법안으로 만든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반영부터 ISP하고 예산편성을……

○소위원장 김의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오늘 오후에 전체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20항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외에 남아 있는 법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9인 중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9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곽규택 위원** 상설특검 아냐, 상설특검?

○**소위원장 김의겸** 예, 상설특검이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법원행정처 수정 의견이 있어서 용어 정비를 좀 했습니다. 큰 내용은 안 바뀌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예.

○**김용민 위원** 찬성해요, 그냥.

○**김남희 위원** 아까 순서 그대로 가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안 바뀌고 합의하신 내용대로 된 걸로 아는데?

○**소위원장 김의겸** 아니요, 파견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곽규택 위원** 줘야 된다는, 그대로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이의 안 하신대요. 그냥 가시지요, 이견.

○**김남희 위원** 잠깐만, 그때 협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김용민 위원** 개정안 내세요, 그냥 개정안.

○**박은정 위원** 넘어가세요, 그냥.

○**곽규택 위원** 뭘 넘어가. 잠깐만.

○**박은정 위원** 그때 합의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의겸** 아니요,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박은정 위원** 합의 안 됐어요?

○**소위원장 김의겸** 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9인 중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19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남희 위원** 저 발언할…… 할 말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표결에는 토론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남희 위원** 표결하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아직 못 한 게 있어서요.

○**김용민 위원** 표결 절차는 토론이 없이 하는 겁니다.

○**김남희 위원** 제가 얘기해야 돼서요.

○**소위원장 김의겸** 아니요, 김 위원님. 이걸……

○**김용민 위원** 절차를 지킵시다. 위원장님, 절차를 좀 지켜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표결에 무슨 토론이……

○**소위원장 김의겸** 예, 의결 절차에 좀……

○**김남희 위원** 아니요, 저는……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절차를 좀 지켜 주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의겸** 김 위원님.

○**김남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항을 제가……

○**김용민 위원** 그냥 표결하시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의겸** 김 위원님, 이미 아까 토론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김남희 위원** 아니, 그런데 1항은 제가 발의한 법안이에요. 제가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이건 예외를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표결에도 국힘이 계속 토론합니다. 안 돼요.

○**소위원장 김의겸** 이건 지금 저희들이 의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김남희 위원** 아니요, 제가 발의한 법안이라고요, 1항은.

○**소위원장 김의겸** 발의한 법안과 관계없이……

○**김용민 위원** 의결 절차는 의결 절차로 가는 거예요.

○**박은정 위원** 김남희 위원님 아까 얘기 다 하셨잖아요.

○**김용민 위원** 의결 절차는 의결 절차대로 가 주십시오. 예외를 만들면 안 돼요.

○**김남희 위원** 그런데 제가……

○**소위원장 김의겸** 그래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건 절차에 원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김남희 위원님이 직접 발의를 하셨더라도 이건 양해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발언권 줍시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제가……

○**김용민 위원** 아니야, 그건 예외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위원장님. 표결 절차에서 토론을 하면 앞으로 예외가 만들어져서 안 돼요.

○**김남희 위원** 표결 절차에서 토론하겠다는 게 아니라 표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김용민 위원** 이미 들어갔어요.

○**박은정 위원** 아니, 이미 들어갔잖아요.

○**김남희 위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아니, 토론은 아까 하셨고요.

○김용민 위원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했으면 모르겠지만……

○김남희 위원 제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내역, 영상 녹화 및 보존에 대해서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예외를 만들면 안 돼요.

○김남희 위원 특별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문인데……

○김용민 위원 그냥 의결하십시오.

○김남희 위원 이런 조문에 대해서조차 그 원칙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확보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김용민 위원 회의를 이렇게 예외를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위원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회의가 뭐니까,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박은정 위원 폐북에 올리세요, 폐북에.

(일부 위원 퇴장)

○소위원장 김의겸 아니, 나가시면 안 되지요.

○박형수 위원 표결합시다. 표결해요.

○김남희 위원 표결해요, 그러면.

○박형수 위원 이의 제기하지 말고 빨리 표결해.

○김태규 위원 지금 표결하시지요. 지금 표결해야지요.

○박형수 위원 진행하세요.

○곽규택 위원 표결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김태규 위원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면서요?

○김남희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소위원장 김의겸 아니요.

김 위원님, 이미 지금 의결 절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곽규택 위원 표결 절차에 들어갑시다. 그냥 표결하시지요.

김남희 위원님, 오후 전체회의 때 또 말씀하세요, 일단 부결시켜 놓고.

○김태규 위원 표결하세요.

○소위원장 김의겸 잠깐 제가 이석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왜 이석을 합니까? 표결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소위원장 김의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9인)

곽규택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형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국방부

차관 이두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

임시회의록